아름다운 생복한 사 교

제2019-206호 2019년 11월 5일(화) 人



보

시정지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0 야시 괴	제2019- 327호	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(죽람현대지역주택조합아파트)	3
0 여쉬 과	제2019- 328호	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	5
0 여수시 고시	제2019- 331호	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	6

공 고

0 야시 광고	제2019-2670호	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전부개성안 입법예고	7
0 여수시 공고	제2019-2671호	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	24
0 여수시 공고	제2019-2679호	도로 지정 공고	25

회				
람				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79번지 외 77필지 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

- 1. 사 업 명 : 여수 죽림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
- 2. 사업주체
 -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13-36,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최규성
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(계동), 현대엔지니어링(주) 대표 성성록
- 3. 사업위치 :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579번지외 77필지
- 4. 사업개요

가. 대지면적 : 51,969 m²

나. 건축면적 : 11,015.7132 m²

다. 연 면 적 : 148,119.968 m²

라. 규 모: 지하2층 · 지상15층, 주20동/부3동, 989세대

- 5. 변경내용
 - 가. 건축면적 · 연면적 · 건폐율 · 용적률 변경
 - 나. 76형 단위세대 변경 및 그에 따른 형별 공급면적 등 변경
 - 다. 아파트 및 주차장 기초변경
 - 라. 115동, 116동, 117동 PIT층 삭제에 따른 후면부 단지 레벨변경
 - 마. 부대 · 복리시설 변경 등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
- 6. 사업기간 : 2019. 4. 26. ~ 2021. 7. 31.
- 7.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
 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 - 다. 「농지법」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
- 8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659-4097)에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.

여수시 고시 제2019-328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.

승인 번호	승 인 수리일	시 주	행 소	자 성 명	사업착수 예 정 일	사업준공 예 정 일	신고내역	점용.사용 장소	면적 (m²)
2019 -42	2019. 11. 5.	여수시 단지로 2층 (어항 63-3, 국동)	㈜삼해개독 (대표자 이동진)	2019. 11. 5.	2020. 3.31.	해상풍력발전 적지 판단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	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127번지(광도)지선 공유수면 2개소 중 금회 1개소(위도 34°19′8.7″경도 127°36′ 25.98″)	1,800 (직접)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고시 제2019 - 33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(신고)하고 고시합니다.

승인	실시계획	시형	냉 자	사업착수	사업준공	점용·사용	7.41.11.0
(신고) 번호	승인 (신고)수리	주 소	성 명	예 정 일	예 정 일	장 소	공사내용
2019-41	2019.11.5.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	대한그린 에너지 (대표이사 박근식)	2019.11	2020.1	여수시 심산면 손죽리 산327번지 지선	해상(풍황) 계측기 설치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공고 제 2019-2670호

공 고

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및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개정, 전라 남도 장애인 콜택시 시·군 요금 단일화 지침,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등을 반영하고 조례 전체의 체계 있는 구성을 위해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」전부 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운행 대수 조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조정

-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이용대상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
 - 임산부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추가 지정
- 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11. 5. ~ 2019. 11. 15.(10일간)
- 4. 제정조례안 : 별첨
-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사항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- 받는사람 : 여수시장(교통과장)

- 전 화: 061-659-4129 팩스: 061-659-5837

- 이 메 일 : 007sunrise@korea.kr

○ **의견제출 방법**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FAX), 이메일(E-Mail)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의 선(사 ㅠ)	기타 삼고사양	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
 - 2.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3.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4.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필요할 경우 위원 중 호선으로 부위원장 1명을

둘 수 있다.

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, 환경복지국장, 해양수산녹지국장, 건설교통국장, 보건소장으로 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장애인 · 노인 · 여성 ·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
- 2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(2명)
- 3.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
- 4.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- 제6조(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)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.
 - 1.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정비
 - 2.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(인도 포함)의 정비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년도 저상버스 도입·운영 계획을 매년말까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저상버스 도입·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- 제7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,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
- 제8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)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의 이용시간 등을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)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- 제10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
 - 2. 65세 이상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
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
 - 4. 임산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- 제11조(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·심사)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본인 확인 서류
 - 가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
 - 나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: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 - 2.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- 가.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복지용구)나. 그 밖의 사람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. 다만, 제11

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
- 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 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.
- 1.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
- 2.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이동환경이 개 선된 경우
- 3.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
- ⑥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11조에 따른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.
- 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,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.

- 제12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)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 - 1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: 5년
 - 2.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: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
- 제13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)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,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 1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.
- 제14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)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 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,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

- 제15조(이용요금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.
 -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 시내·시외버스,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 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 -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시장(특별교 통수단을 관리·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)에게 납부해야 한다.
- 제16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)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은 출발지가 여수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.
 -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·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 - 1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: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
 - 2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(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, 도시철도차량, 철도차량, 비행기, 선박 등)이 있는 경우 : 해당 대중

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

- 3.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: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.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7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
 - 2.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
 - 3.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
 - 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5.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 - 6.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,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
 - 7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 -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,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

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센터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- 1. 공공기관
- 2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
- 3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
- 4. 민간단체
-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지원한다.
-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.
- 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.

-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19조(교육)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
 - 2. 장애인의 인권
 - 3. 교통약자서비스
 - 4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2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결과 통보받은 사람으로 본다.

[앞쪽]

접수								<u></u> 결	접	수자		결:	재권자
번호								재					
	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												
※ 선택시	. 하에 √.	표 하세	요										
	성	명			신 신	[년월일				<u>خ</u>] 별	(1	남/여)
신 청 인	주	소								관	<u>-</u> 계		
	전화'	번호					휴다	[폰번호	Σ				
	성	명			샹	[년월일				샹	별	(1	남/여)
이 용 대상자	주	소											
	전화번호						휴다	폰번호	Σ				
	교통약자 유형		□장애(장애)		□65	세이	 상 고령	병자		
			□기타()		·					
유형	일상생활상태 독립		독립	부분도	부분도움 완전도움		의사소통		7	가능		불가능	
	휠 체 어		전동	수동	=	없음	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		본역	<u>)]</u>	보호자	없음	
생활형태	거주	형태	단독주택	연립]	아파트	국민) 보장	기초생 유・	활 무	급여	종류()	해당무
/8월 8 네 	가족(동	거인)수				명		보 조 인		9	있음		없음
			의 이동편 ^의 는 위와 같이			_	1조제2형	당에 ¤	라라	특별교	통수	한 등 여	기용대
				년		월	일						
			신청인	본 대리				서명 5 서명 5					
여수	시장(2	전라님	計도 광역	이동	テス	원센터] 장) -	귀하					
※ 신청서	작성 및	및 첨부	-서류에 대한	해서는	뒤	쪽을 참	조해 주	십시오	•				

 $210\text{mm} \times 297\text{mm}$

신청서 작성 안내

- ①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1. 본인 확인 서류
 - 가.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.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.
 - 나.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: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 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.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.
- 2.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- 가.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
 - 나. 그 밖의 사람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3.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 약 서

본인은 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인)

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: 0000-수 신: ○○○ 귀하(○○동 ○○번지) 「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(승인/불승인)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이용대상자와의 주 소 ٥) 관계 0] 성 명 생년월일 용 대 상 주 소 □ 장애 □ 65세 이상 고령자 □ 기타 교통약자 유형 (장애) 차 량 □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□ 일반 차량 유 형 이 용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↑ 까지 기 간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여수시장(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장) (인)

 $210\text{mm} \times 297\text{mm}$

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 광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

○ 양수인가 내용

연번	구 분	허가번호	발전소명 [대표자]	설치장소	설치용량 (W)	비고
4	양도인	여수	백광1호 태양광발전소 〔(주)백광 김선주〕	여수시 묘도동	998.775	
	양수인	제377호	묘도1호 태양광발전소 [이광석]	산219-1번지	990.773	
2	양도인	여수	산아1호 태양광발전소 [(주)산아 안태길]	여수시 묘도동 산219-1번지	998.775	
양수인		제378호	묘도2호 태양광발전소 [오미영]	여수시 묘도동 산219-4번지	990.773	신219-1번지 에서 분할

[여수시 공고 제2019-2679호]

도로 지정 공고

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88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j	계	14.43m	0.9m	13.0 m²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돌산읍 군내리	588	14.43m	0.9m	13.0 m²	"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5.

여 수 시 장